

인권센터 규정

제 정 : 2022. 2. 11.
개 정 : 2022. 3.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이하 “본교” 라고 한다)의 대학 인권문화 조성 및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설치된 “금강대학교 인권센터” (이하 “인권센터”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별, 종교, 국적, 장애, 사상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폭언,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침해행위”란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행위 등 제1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 등 성적 언동 및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차별행위,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2차 가해행위”란 당해 사건이후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본교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12.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당해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본교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구성원”이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과 업무

제4조(구성) ① 본교에 사건의 피해관련 상담 및 조사, 피해자 지원 및 구제, 행위자에 대한 제발방지 교육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두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개정 2022. 3. 31.>

②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조교수를 서리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④ 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담당과 인권침해행위 관련 담당을 각각 둘 수 있다.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둔다. <개정 2022. 3. 31.>

제5조(고충상담원)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상담원을 포함하여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상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한다.

제6조(업무) ①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원회

제1절 인권위원회

제7조(설치) 인권센터의 운영 및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3. 31.>

③ 위원은 인권보호 전문가 1인 이상, 교직원 1인 이상, 학생 2인 이상을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3. 31.>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으며, 학생위원은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2. 3. 31.>

⑤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⑧ 사안에 따라 학생 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재적 위원에서 제외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고 접수된 사건 중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와 대책마련

5. 예방

6. 이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7. 그 밖의 인권센터 운영,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3. 센터에서 인권침해 등의 사건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2절 조사위원회

제11조(설치) 센터장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및 기능) ① 조사위원회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남녀 위원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경과 및 결과를 인권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4장 조사와 구제절차

제13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및 신고할 수 있다.

② 해당사건의 상담 신청 및 신고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 센터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등
2. 공간분리 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등
3.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 배제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5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조사결과는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 및 중재)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를 위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 ③ 조정 및 중재가 성립된 경우 센터장은 각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 ④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한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⑤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 기각) ①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가 기각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의 요청 및 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피신고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인, 대리인 및 참고인에게 보복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가중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2차 가해를 야기하거나 인권센터의 조사활동 및 조치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척, 기피, 회피) ① 조사위원과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고인은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조사위원 및 심의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 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인권위원회가 각각 그 가부를 결정하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심의 및 의결에서 배제된다.

④ 조사위원 및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장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불이익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폭력예방교육) ① 본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기관장, 전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외부에서 파견된 상주인원, 용역직원으로 한다.

③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부생, 대학원생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법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6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경비)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한 외부위원에게는 별도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인권센터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